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53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승수・박성훈・강선영

김희정 • 박성민 • 조승환

서지영 • 박준태 • 조배숙

이인선 · 강대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한 후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또는약물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 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에 동승한 자가 운전자의 제5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운전자와 같은 형(刑)으로 처벌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생 략)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
	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
	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에 동승한 자가 운전자의 제5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
	은 때에는 운전자와 같은 형(刑)
	으로 처벌한다.
<u>⑤</u> (생 략)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2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 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u>한정한다)</u> 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곤란하 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 적으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 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